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 근거 신설〉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00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원자재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27.
3. 회 부 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원자재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u>

현행	개정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u>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서도 농촌융복합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전기·면세유 등을 지원하고 있고, 타업종(식품 제조·가공업 등) 대비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가 공급망 위험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급등 등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화의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제21대국회 심사경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안, 제2122929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2023.11.23.)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라. 검토의견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임(법 제2조제3호).

이는 농업(제1차산업)과 제조·가공(제2차산업) 그리고 체험·관광·유통 등 서비스업(제3차산업)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제6차산업이라고도 불림.

[농촌융복합산업 개념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리플렛,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원재료를 재배하면서 가공품도 생산하는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결합, 원재료를 생산하면서 체험관광·특산물 판매등을 수행 하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결합, 특산물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판매와 체험활동 등

을 병행하는 2차산업과 3차산업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 산업이 운영되고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예시]

구분	사 례	관련산업
전남고창복분자	복분자 재배·생산	제1차산업
	복분자주스 복분자 와인 등 가공제품의 생산	제2차산업
	복분자 체험 관광(수확 체험, 가공 공장 견학), 복분자 축제 개최, 지역 특산품 판매	제3차산업
경북안동전통주	쌀, 밀 등 전통주 원료 생산	제1차산업
	안동소주, 약주 등의 전통주 제조·가공	제2차산업
	하회마을에서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소주 빚기 체험), 전통주 판매,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제3차산업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현행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2024년 12월 기준 총 2,525개소¹⁾이며, 2023년 12월 기준 매출액은 총 4조 2,655여억원, 총 고용인원은 18,62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현황]

(명, 백만원)

구분	총 매출액	평균 매출액	총 고용인원	비 고(누적개소수)
'15년	739,018	921	6,561	'15년인증(802개소)
'16년	1,137,904	1,007	14,337	'16년인증(1,130개소)
'17년	1,884,984	1,349	11,595	'17년인증(1,397개소)
'18년	2,423,249	1,590	9,584	'18년인증(1,524개소)
'19년	2,460,674	1,515	11,870	'19년인증(1,624개소)
'20년	2,732,204	1,431	13,623	'20년인증(1,909개소)
'21년	3,309,942	1,627	15,685	'21년인증(2,034개소)
'22년	3,626,961	1,646	17,709	'22년인증(2,204개소)
'23년	4,265,553	1,780	18,626	'23년인증(2,396개소)
'24년	-	-	-	'24년인증(2,525개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1) 12쪽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조직형태별 현황 참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은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에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국가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판로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금융지원 등 지원의 근거를 두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였던 유가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유가상승 추이]

(단위 : 두바이, \$/bbl)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유가	60.0	66.9	71.7	78.4	95.6	108.1	96.9	84.9	80.3	77.8	86.7	83.5	81.3	85.3	78.3	73.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 1.20. 제출)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 타개를 위해 '21. 1월부터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22. 2분기부터 요금 인상을 인상해 오고 있어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전기요금 인상 추이]

(단위 : kℓ, 백만원)

계약종		'21년	'22년(+19.3원) (전력+연료+기후)	'23년(전력+연료+기후)			'24년(전력+연료+기후)		
				1분기 (농사용 : +5.5원 농사용외 : +131원)	2분기·3분기 (농사용 : +2.7원 농사용외 : +8원)	4분기 (산업용을 : +67원)	1분기 (농사용 : +3.8원)	2분기 (농사용 : +2.7원)	4분기 (산업용 갑 : +85원 산업용 을 : +169원)
농 사 용	갑	21.9	41.2(88.1% ↑) (28.9+5+7.3)	46.7(13.3% ↑) (32.7+5+9)	49.4(5.8% ↑) (35.4+5+9)	-	53.2(7.7% ↑) (39.2+5+9)	55.9(5.1% ↑) (41.9+5+9)	-
	을	39.5	58.8(48.9% ↑) (46.5+5+7.3)	64.3(9.4% ↑) (50.3+5+9)	67.0(4.2% ↑) (53.0+5+9)	-	70.8(5.7% ↑) (53.0+5+9)	73.5(3.8% ↑) (59.5+5+9)	-
산 업 용	갑	89.9	109.2(21.5% ↑) (96.9+5+7.3)	122.3(12.0% ↑) (108.3+5+9)	130.3(6.5% ↑) (116.3+5+9)	-	-	-	138.8(6.5% ↑) (124.8+5+9)
	을	114.8	138.6(20.7% ↑) (126.3+5+7.3)	151.7(9.5% ↑) (137.7+5+9)	159.7(5.3% ↑) (145.7+5+9)	166.4(4.2% ↑) (152.4+5+9)	-	-	183.3(10.2% ↑) (169.3+5+9)
주 택 용	저 압	93.6	112.9(20.6% ↑) (100.6+5+7.3)	126.0(11.6% ↑) (112.0+5+9)	134.0(6.3% ↑) (120.0+5+9)	-	-	-	-
일 민 용	갑	116.2	135.5(16.6% ↑) (123.2+5+7.3)	148.6(9.7% ↑) (134.6+5+9)	156.6(5.4% ↑) (142.6+5+9)	-	-	-	-
기 타 용	갑	97.2	116.5(19.9% ↑) (104.2+5+7.3)	129.6(11.2% ↑) (115.6+5+9)	137.6(6.2% ↑) (123.6+5+9)	-	-	-	-
	을	160.7	180.0(12.0% ↑) (167.7+5+7.3)	193.1(7.3% ↑) (179.1+5+9)	201.1(4.1% ↑) (187.1+5+9)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 1.20. 제출)

이러한 유류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은 농촌융복합사업자의 경영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가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5조제1항²⁾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거를 두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지원 비교]

구분	현행법(제25조제1항)	개정안(안 제25조제2항 신설)
지원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원사항	자금 융자·투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필요한 지원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재구성

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³⁾은 농어업과 직접 관계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및 어선 등에 대하여 “면세 유류”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제16조,⁴⁾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서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면서,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은 다른 계약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사업자가 농업(1차산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 면세혜택과 농업용전기의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제조·가공(2차산업)을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의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24년 3월부터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에너지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음.

3)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4.3.26. 시행)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의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7.22 시행)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률을 통해서도 에너지비용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업경영체 및 소상공인 기준]

구분	기준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과 업종별 상시종사자 수 기준을 동시 충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농림어업)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상시종사자 5인 미만 -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 상시종사자 10인 미만 - (숙박·음식점업)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상시종사자 5명 미만 - (예술·스포츠·여가)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상시종사자 5인 미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 1.20. 제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조직형태별 현황]

(2024.12.31. 기준, 명)

구분	농업인 ⁵⁾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협 등)	기타 ⁶⁾	합계
		영농조합법인 ⁷⁾	농업회사법인 ⁸⁾			
개소수	229	547	1,000	61	688	2,5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25.1.20. 제출)

따라서 개정안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타 산업 유사 지원 사례와의
형평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향후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 기타: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참고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 개요

□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제도

- (요건) ①대상 주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②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③주원료
 - * 생산지(국산 100%, 지역산** 50% 이상), ④평균 매출액(5개년 농가소득(44백만원) 이상)
 - * 1차 산업(농업)은 반드시 포함하며 자가생산·계약재배 등을 통해 조달 가능
 - ** 사업장 소재 시·도 기준, 단, 타 시·도에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지역산으로 간주
- (기한) 3년
 - * 기한 경과 시 갱신 가능
- (현황) 총 2,525개소('24.12.31 기준)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2,525	230	247	177	257	400	415	287	261	171	39	41

□ 주요 지원정책

- (판로개척) 지역 농협 및 마트,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내전용 판매관(83개소) 운영,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 민간 판매플랫폼 입점 및 주요 시기별 판촉전 진행
- (컨설팅) 일반(단순 애로사항), 제품(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보육(경영진단, 사업계획)으로 구분하여 최대 12개월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운영
- (자금지원) 운영(3억원), 시설(20억원) 자금 저리(고정 2.0% 또는 변동) 융자
 -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내 농촌융복합사업자 대상 연간 150억 규모 할당
- (민간투자) 창업 초기(7년 미만) 사업자 대상 전문 액셀러레이터(2개소) 매칭을 통한 보육·투자 유치 촉진, 민간투자 기반 1:1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억원)
- (입지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한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사업 영위 조건을 삭제하고('24.5), 건축뿐만 아니라 용도변경까지 허용('24.7)
- (농지이용)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포함

참고2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 일부 지원 사례(산업)

□ 농업용 기계 면세유 지원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콩나물재배업은 제외),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유류(경유·등유·휘발유·중유·윤활유·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면제('86.3.1~)
 - *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난방기 등 농업기계 42종
 - 전년도에 석유류 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신청(농업중앙회장→농식품부→기재부)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조합장이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 배정 및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연평균 면세액 577,457백만원 지원

□ 시설원에 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22년)

- (근거법령)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 제7조, 제23조
- (지원대상) '22.10~12월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에 농업인(법인), '22.6~12월 중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시설원에 월별('22.10~12월)·유종별 평균가격-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 차액 50% 지원(리터당 최대 약 130원), 어업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기준가격(1,100원)의 차액 50% 지원(리터당 최대 약 112.5원)
- (지원현황) 시설원에 15,118백만원('22.10~12), 어업 44,756백만원('22.6~12)

참고3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 일부 지원 사례(취약계층)

□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 (근거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3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정액*이 충전되어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자동으로 에너지 공급사가 요금을 차감) 발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계	148,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 (근거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내용)
 -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지급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2인	257,200원	
		3인	146,600원	
		4인 이상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원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② 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 (카드·현금 등 징구)

□ 긴급복지 지원사업

-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단,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월별 정액금(110,000원) 지원